한국의학도서관 : 제 27 권 제 1, 2 호 2000

개정저작권법과 도서관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

심 명 아

서 론

컴퓨터,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지식 및 정보 기반의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지식자산의 가치가 점차 증대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는 도서관은 저작권 및 관련법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식의 공유와 전파를 도모하여 인류발전과 문화창달에 공헌하는 도서관의 공익성과 저작권자의 보호라는 저작권의 기본개념이 상충되고 있다. 생겨날 때부터 중요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해왔다는 저작권법이지만 지금까지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판례나 선례가 세계적으로 전혀 없으며,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대표적인 저작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1988년 베른 협약에 가입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 규범들을 자국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제정하는 등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최신의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제를 선구적으로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 또한 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 12일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같은 해 7월 27일 시행령을 발효하였다.

본 고에서는 저작권법의 성립배경을 알아보고 최근에 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도서관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이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창작성(Originality)이 인정된 것이라면 어린아이의 그림이나 작문, 통신공간에 게시한 글 및 E-Mail도 저작물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성립과 발전과정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복제하기 위해 손으로 일일이 써야 했으므로 그 복제량이 극히 적었고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의 발명과 더불어 인쇄술이 발달하여 출판업이 크게 부흥하고 대중매체의 시대가 열리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규명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709년에는 학문을 장려하며 법정기간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Queen Anne's Statute)이 제정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활동과 지식산업을 보호하는 법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18세기 이후 나라 사이의 교역 및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물을 둘러싼 표절과 해적행위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자 나라마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절실해졌으며, 1886년에 여러 나라 사이의 최초의 저작권 조약인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을 맺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08년 8월 12일에 체결된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되었으며, 국민의 학문 · 예술에 대한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강에 의한 시장지배의 일환으로 외국인(미국 · 일본)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특이한 역사를 지녔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195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당시 나라의 경제사정이나 문화여건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었다. 1980년도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도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제나 번역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므로 베른조약이나 세계저작권조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UCC)같은 국제적인 저작권 기구로부터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시대적으로 낙후된 저작권법을 가지고는 날로 커지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판업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의 요구가 거세지자 1986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UCC에 가입하였다. 1987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그 후 소폭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디지털기술 및 정보통신망의 급격한 변화 · 발달에 따라 기존 법의 제도적 보완 및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대응과 국제조약 체제의 수용을 위해 새로운 개정을 하게 된다.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법령심사를 받아 2000년 7월 27일 시행령을 공포, 발효되었다.

개정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 전송권의 신설 및 저작재산권에 추가

◎ 전송의 정의(제 9조 2항)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권(제 18조 2항)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 등 온라인 상의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이 신설되어 저작물을 유 · 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전송의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였는데,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것, 출판사의 E-Book 등의 제작 및 제공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 복제권에 대한 도서관 면책

◎ 복제의 정의(제 14조)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고정하거나 유형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 28조)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8조는 도서관이 수행하는 공공적 봉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하의 도서관 서비스를 감

안하여 저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일부 제한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제를 허용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감상이나 독서용이 아닌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한 부분에 한하여 한 사람에게 단 1부만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저작재산권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시판에서 구독할 수 없는 희귀한 자료의 손상이나 훼손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복제하여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고 복사본을 일반이용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판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나, 도서관의 예산 사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다른 도서관 등에서 복제물의 제공요구가 있어야만 하며, 요구하는 자료가 절판 또는 그 매체를 발행하는 곳이 이미 문을 닫아 더 이상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 등의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이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구할 수는 있으나 도서관 등이 예산사정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복제물을 요구하는 도서관 등에서는 보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 2항은 디지털 환경하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서, 도서관 등도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저작권법의 시행령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전송 관련 규정

◎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시행령 제 3조)

"법 제 28조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저작권법 제 28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관종의 도서관이 저작자의 허락없이 도서 등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기관을 임의적으로 국립도서관 등의 몇몇 기관으로 제한하였다.

2) 저작재산권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 3조 2항)

"법 제 28조 2항 후단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가. 당해 시설과 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는 제 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 현시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 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기술적 조치로서 복제방지장치는 저작물에의 접근은 통제하지 않지만 자료현시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송할 경우 이를 금지 또는 통제하려는 장치를 말하며, 암호화조치란 저작물이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형태를 변환한 뒤 특정한 절차를 거쳐 원상태로 회복되어야만 열거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

1)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개정저작권법이 시행, 발효된 후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그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자료의 복제·전송이 불가하여 디지털도서관 구축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립대학도서관의 반응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개정저작권법 시행령이 공표된 이후 2000년 8월부터 문제제기를 한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사대도협)은 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작권법 시행령과 관련한 개정 운동을 지속하고 향후 대안을 검토하였다. 사대도협은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치된 모순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립과 사립대학교를 차별화한 불평등한 법으로서, 정보공유와 상호지원 강화라는 시대정신과도 배치되며, 사립대학 도서관들의 봉사기능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며, 그 결과 대학의 학문 조사 및 연구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보계층화를 심화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므로 현 저작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대도협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제안 중, 제 1안은 단서조항에 따른 복제의 허용주체에 대해 "사립대학교 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제 2안은 단서조항의 삭제이다.

사대도협은 향후 강력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0년 11월 16일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홍보, 서명날인, 유관 단체 협조 공문 발송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디지털 자료의 납본 거부, KERIS에 DB 제공 거부, 출판사에 대한 압력 행사, 국립기관에 대한 협조 소극화, 상호대차 협력기구 창설, 헌법소원 제기(위헌명령 심사 청구) 등을 차례대로 진행시킬 예정이다.

2) LG상남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원문 온라인서비스를 주로 해 온 LG상남도서관의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즉, 기업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사대도협과는 또 다른 입장에 놓여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역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작권 법 개정 이후 원문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저작권법의 문제점

1) 복제·전송·열람의 엄격한 구별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의 제한

개정저작권법 제 28조 1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조사·연구 목적, 도서관의 자체보존, 절판자료 등의 보존 용도로 제공할 경우에 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이라도 팩시밀리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에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해석이 있었다.

또 개정법 제 28조 2항과 시행령 제 3조 2항에서는 복제·전송·열람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 및 관내에서라도 프린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억장치에의 저장 등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디지털 복제물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 내부에서(다른 도서관 포함) 단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복제와 전송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편, 팩시밀리나 E-mail을 통한 적극적인 배포는 불가하다는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견해가 있어 도서관에서 기존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던 원문의 상호대차서비스도 제한을 받는다.

2) 디지털 복제 허용 도서관의 제한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에 명시된 각 관종의 도서관을 의미하였는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한 디지털 복제의 경우는 국립대학과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원문디지털화의 관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도서관들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의 원문디지털화와 전문·특수 도서관의 자체발간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원문디지털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실제 저작권법 제정 시 사전에 우리나라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문 DB 구축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는데 저작권법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미 구축된 DB가 사장되거나 이용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 복제에 의한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제시설을 제한하고자 했다면 도서관계(협회, 학회,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반영했어야 한다.

3) 기술조치에 수반되는 또 다른 과제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 현시 외의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및 암호화 조치, 자료 내용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판매용 전자매체의 이용방지 장치의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기술개발에 대한 시간,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치 개발 및 설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4) 병원도서관(의학도서관) 및 전문·특수도서관의 영리성에 대한 해석

저작권법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영리(營利)라 함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도서관의 주체가 병원이나 기업체 등인 경우에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질병치료와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순수하게 조사·연구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비영리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도서관 주체의 성격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서비스의 이념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5) 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편중성

저작권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저작물 이용빈도를 파악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청구하기도 힘들고, 이용자측에서도 누가 저작권자인지 알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일일이 그 소재를 찾아 교섭하기가 몹시 불편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받고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및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일본의 "일본복사권센터(Japan Reprographic Rights Center)"를 비롯하여 30개국 32단체가 "국제복사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 또한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주)한국학술정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여섯 개 저작권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2000년 7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도서관계의 참여를 배재시킨 점이 문제가 되겠다.

결 론

미국의 코넬대학과 보스턴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자신의 텍스트 및 논문의 DB화를 거부하며 필요한 부분만 발췌·복사하여 마치 스크랩북과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패션쇼에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의 컴퓨터 통신망에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자들에게 사진촬영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이는 저작권자들 스스로가 권리 보호의 자구책을 강구함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이용이 제한되

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서, 저작자에게 저작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정도의 저작권 보호가 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저작물의 최종이용자인 일반이용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근본 목적이 되는 사회적 · 문화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저작권자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예외를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빈자들을 정보혁명에서 배제하고 정보의 빈부격차를 증대시켜 경제적으로도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획득이 쉬운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그렇치 못한 사람들에 비해 20배 이상이라고 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자에게 권력이 이동한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도서관의 입장만을 앞세워서도 안되며, 너무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라는 측면이 무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은 창의성과 혁신, 연구, 교육,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저작물에의 합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권리 소유자의 이익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균형 잡힌 저작권법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진 외국의 사서들 중에는 저작권법 전문가가 많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도서관인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저작권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도서관간의 관종을 넘어선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도서관계의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계와 입장이 다른 출판계, 법조계와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서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대안을 강구하고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문제와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충분한 예산지원 및 지속적이 관심, 협조, 노력이 뒤따를 때 사회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균형 잡힌 저작권법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WIPO조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2) 정상조.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1996; 250: 10-14.
3) 남영준. "저작권에 기반한 도서관 정보봉사의 확대방안", 한국의학도서관 1999; 26(2): 65-79.
4)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 2000년 정기 Workshop 저작권 관련 질의 응답(delias.dongeui.ac.kr/mailing/bbs/opendata.html)
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미국 저작권법(2000)", 동위원회, 2000.
6) 최경수. "개정저작권법 주요 내용",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0. p.301-309.
7) www.copyright.or.kr/sang/hun/hunview.asp?P=1&N=1&T=B04.
8) 윤선영. "전자매체시대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1996; 250: 66-77.
9) 김진우.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과 도서관 2000; 1(3): 22-31.
10) 진경복. "Copyright, Copyleft", 시민과 도서관 2000; 1(3): 76-81.
11) 이순자. "도서관 · 정보센터 경영론", 한국도서관협회, 1997.
12) 심효정, 최민경. "개정저작권법과 원문 DB 사업", 시민과 도서관 2000; 1(3): 32-53.
13) 윤선영. "도서관 입장에서 본 저작권법 개정내용",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0. p. 317-324.
14) delias.dongeui.ac.kr/mailing/messages/data1/7344.html
15) www.copyright.or.kr/sang/sangqa/BBSQView.asp?N=1030&P=1&l=2.
16) delias.dongeui.ac.kr/mailing/messages/data1/6973.html
17) 송재술.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 소개", 시민과 도서관 2000; 1(3): 82-88.
18) 윤송이. "디지털 디바이드", 한국경제신문(2001. 2. 24).
19) 한국도서관협회.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에 대한 IFLA의 입장", 도서관문화 2000; 41(6): 65-72.